

工業所有權審判事例

意匠拒絶査定

〈大法院 第2部 判決〉(1985. 10. 22)

事件番號：85후 29

裁判長：정태균

關與法官：신경철 · 김형기

1. 審判請求人(上告人)：한국음료(株)(代表：이동열)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特許廳長

3. 原審決：特許廳 1985. 1. 29字, 1983年 抗告審判(絕) 第607號 審決

4. 主文：上告를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の 부담으로 한다.

5. 理由：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意匠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美的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意匠의 類似여부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美感과 인상의 類似性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 경우 意匠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類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고(당원 1983. 6. 28 선고 82후 76 판결 참조, 意匠登録을 받으려면 그 意匠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등록된 意匠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意匠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意匠法 第5條 第2項)

기록에 의하면 審判請求人들이 出願한 1982年 意匠登録出願 第9013號 意匠은 음료포장용 강통들레의 윗부분은 빨강색, 아랫부분은 여러개의 가로로된 빨강색 띠를 배치하고 그 위에 사과를 1/4가량 잘나낸 모양을 포함한 음료포장용기에 관한 意匠이고, 그 出願前에 登錄된 第21784號 意匠은 음료포장용 강통들레의 윗부분은 새로로 초록, 노랑, 초록색 순서로 3선의 띠가 있고 그 3선의 띠 중간에 주황색 원판속에 들어있는 해태

무늬가 있으며 그 중간부분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에는 초록색과 노랑색을 4회 연속 반복한 중앙에 사과를 표현한 意匠으로서, 兩意匠은 배치되어 있는 띠와 사과모양 및 해태무늬의 유무 등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兩意匠에 있어 모든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는 아랫부분에 배치된 띠와 그 띠위에 그려진 사과의 모양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전체적으로 대비해 볼 때 兩意匠의 띠와 그 위에 표현된 사과의 모양이 類似하여 그 요부가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며, 本願意匠은 기등록된 意匠과 색상에 차이가 있을 뿐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本願意匠이, 意匠法 第5條 第2項에 해당되어 登錄될 수 없는 것이다 하여 이를 拒絶査定한 初審決을 유지한 原審審決의 조치는 정당하고, 原審審決에 意匠의 類似性 및 創件性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理由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被訴者인 審判請求人 부담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일치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终>